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1,447,233	6,643,417
일반회계	182,779,453	5,483,384
특별회계	38,667,780	1,160,033
공기업특별회계	33,237,446	997,1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52,073	574,56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085,373	422,561
기타특별회계	5,430,334	162,910
주택사업특별회계	244,000	7,3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64,831	25,945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51,980	4,55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16,531	15,496
공업단지특별회계	520,000	15,6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48,097	28,44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99,971	14,999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1,507,794	45,234
기반시설특별회계	177,130	5,31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22,61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